

동부 델타-ACE 1단위 주식혼합증권투자신탁 제5-8호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동부 델타-ACE1단위주식혼합증권투자신탁 제5-8호”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동부자산운용’이 작성한 자료입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당해 투자신탁의 투자에 따른 위험, 주된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투자방침, 가입방법, 투자금 회수 방법, 관련 보수 및 수수료, 과세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부 델타-ACE 1단위 주식혼합증권투자신탁 제5-8호

투자신탁명	동부 델타-ACE 1단위 주식혼합증권투자신탁 제5-8호
자산운용회사명	동부자산운용
판매회사명 및 상담가능전화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나은행(☎ 1588-1111, www.hanabank.com)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 <p>판매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합니다</p> <p>※ 판매회사는 수익증권의 판매업무만을 영위할 뿐 투자신탁의 운용과는 무관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장하거나 손실을 보전하지 않습니다.</p>
작성기준일	2008.12.31
투자설명서 비치 · 공시장소 및 인터넷 게시주소	판매회사 본 · 지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산운용회사 인터넷 홈페이지(www.dongbuam.co.kr) 자산운용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amak.or.kr)

금융감독위원회는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을 승인하거나 투자설명서 내용의 정확성 및 적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또한 투자신탁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요약(핵심설명서) : 이 펀드의 주요 특징만을 파악하고 싶다면?

제 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 이 펀드의 기본정보를 알고 싶다면?

1. 투자신탁의 개요
명칭, 상품의 존속기간, 투자신탁유형, 자산운용회사, 최초설정일 등 연혁, 수탁고 추이, 해지사유
2. 투자정보
투자목적, 주요 투자전략, 주요 투자위험,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기준가격, 운용전문인력, 투자실적(연도별 수익률 추이, 연평균 수익률)
3. 수수료 · 보수, 과세
수익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4. 수익증권의 매입 · 환매, 분배
매입, 환매, 이익 등의 분배

제 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 이 펀드를 상세하게 알고 싶다면?

1.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투자전략, 투자위험, 투자대상, 투자제한
2.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
3.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중개회사 선정기준
4. 수익증권의 매입 · 환매 및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매입관련 유의사항, 수익증권의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익 등의 분배관련 유의사항

제 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 이 펀드의 운용회사, 판매회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채권평가회사를 알고 싶다면?

1. 자산운용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운용자산규모, 운용전문인력관련 사항
2. 판매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3. 수탁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4. 일반사무관리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5. 채권평가회사
회사 개요, 주요업무

제 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 투자자의 권리와 공시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1. 수익자의 권리
수익자 총회 및 의결권, 잔여재산분배, 장부 · 서류의 열람 및 등 · 초본 교부청구권, 손해배상책임, 재판관할,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2. 공시
정기공시 및 보고서, 수시공시

<참고> 용어 정리 : 투자설명서에 나온 용어가 너무 어려워요

<참고> 펀드 용어 정리

* 본문에 기울임체로 기재된 단어들은 투자설명서 마지막의 '<참고>펀드 용어 정리'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상품의 핵심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요약(핵심설명서)

I. 투자신탁의 개요(본문 6쪽)

- 명칭: 동부델타-ACE1단위주식혼합증권투자신탁제5-8호(자산운용협회펀드코드: 77555)
- 신탁계약기간 :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간
- 종류 : 주식혼합형, 단위형, 개방형
- 자산운용회사 : 동부자산운용(주)

II. 투자정보(본문 6~11쪽)

구분	주요 내용
1. 투자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포트폴리오 및 장내파생상품의 비중을 민감도(델타)에 따라 조정하면서 만기시점의 목표수익구조를 추구하는 전략을 취함- 비교지수: KOSPI200 x 실제주식편입비율+ CD x (100- 실제주식편입비율) (비교지수는 동부자산운용 홈페이지(www.dongbuam.co.kr)에서 확인 가능)
2. 주요 투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식시장 변동에 따라 주식편입비율 조정(주가 상승시 편입비율 감소, 주가하락시 편입비율 증가)- 운용기간 중 일정수준 시장하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장내파생상품 이용
3. 주요 투자위험	<p>「예금자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주식의 가격변동 등에 따라 투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기시 목표수익구조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지만, 실제운용상황에 따라 운용수익률은 목표수익률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음- 운용기간중 기준지수 대비 40%이상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라도 과도한 매매 비용 등 발생할 때, 주식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KOSPI200지수등락률에 비해 저조할 때, 현격한 시장변동성 축소로 매매기회가 부족할 때, 파생상품의 투자 수익으로 주식포트폴리오의 보유로 인한 손실을 방어할 수 없을 때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운용기간 중 기준지수 대비 40%이상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5등급 중 1등급-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위험과 만기목표수익구조를 이해하고 일정구간에서의 제한된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
5. 기준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 판매회사 영업점 또는 자산운용회사 홈페이지(www.dongbuam.co.kr)에서 확인 가능

6. 운용전문인력

성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운용중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규모	
이경희	1968년	선임 운용역	132개	14,52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동부델타프리베주식혼합펀드6호 (2007.10~현재)-동부델타-프라임1단위주식혼합 1호(2007.9~현재)

7. 투자실적 추이(연도별 수익률 추이) :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도	2007.12.31~2008.12.23	
	투자신탁	비교지수
연평균 수익률	-22.77%	-32.39%

* 비교지수 : KOSPI200*실제주식편입비율 + CD*(100-실제주식편입비율)

III. 매입 · 환매관련 정보(☞본문 11~14쪽)

1. 수수료 및 보수

구 分		지급비율(연간, %)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선취 판매수수료 ¹⁾ 납입금액의 1.0%
		판매수수료(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으로 징수) ¹⁾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180일 미만 이익금의 30%
펀드에서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순자산총액 기준)	보수	운용회사 보수 연 0.3625%
		판매회사 보수 연 0.7900%
		기타 보수 연 0.0475%
		보수합계 연 1.2000%
	기타 비용	기타 비용 연 0.7800%
		총 보수 · 비용 비율 ²⁾ 총 연 1.98%

주1) 선취 판매수수료는 매입시, 환매수수료는 환매시 일회적으로 부과

주2)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전체적인 보수 · 비용 수준을 나타냄

주3) 기타비용이란 유가증권 매매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2007.12.31 ~ 2008.12.23 의 기타비용 비율을 사용하였음

2. 과세 : 수익자는 국내상장주식 등의 매매 · 평가손익을 제외한 과세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등 (2008.12 현재 개인 15.4%, 법인 14.0% 원천징수)을 부담합니다.-세부사항은 본문 참조

3. 매입 · 환매절차 : 이 수익증권의 매입 · 환매는 판매회사의 영업시간에만 가능

구분	오후 3시 이전	오후 3시 경과 후
매입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의 다음 영업일(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환매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2영업일 (D+1)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청구일(D)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4영업일(D+3)에 환매대금을 지급

* 의문사항 또는 불편사항(민원)이 있는 경우 판매회사 상담센터(하나은행 1588-1111)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hanabank.com)를 통해 문의하거나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약(핵심설명서)’은 투자설명서의 주요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의 투자목적, 투자위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투자설명서 본문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판매회사) _____ (점포명) _____ (판매직원/취득권유인 직위 및 성명) _____ (은)는
(고객 성명) _____에게 투자설명서를 교부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년 월 일
판매직원/취득권유인 _____ 서명 또는 (인)

본 문

제 1부. 투자신탁의 기본정보

I . 투자신탁의 개요

1. 명칭 : 동부 델타-ACE 1단위 주식혼합증권투자신탁 제5-8호(펀드코드 : 77555)
2. 펀드존속기간: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3년간
3. 분류 : 증권간접투자기구, 주식혼합형, 단위형, 개방형
4. 자산운용회사 : 동부자산운용
5. 최초설정일 등 연혁 :
 - 2007. 12. 31. 설정
 - 2008. 12. 31. 약관변경(신탁계약기간 변경, 보수인하)
6. 수탁고 추이 :

(단위 : 원)

구분	현재 2008.12.23	6 개월전 2008.6.23
수탁고금액	4,892,256,593	8,041,046,753
수탁고증가율	-39.16%	-

7. 해지사유

자산운용회사는 공익 또는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거나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2) 1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3) 수익증권 전부의 환매청구가 있는 경우

II. 투자정보

1. 투자목적 : 주식포트폴리오 및 장내파생상품의 비중을 민감도(델타)에 따라 조정하면서 만기시점 목표수익구조 추구

- 이 투자신탁은 주식 및 채권등에 투자하는 혼합형 투자신탁으로서 주식포트폴리오 및 장내파생상품의 비중을 민감도(델타)에 따라 조정하면서 만기시점의 목표수익구조를 추구하는 전략을 취하는 투자신탁입니다.
- 당해 자산운용회사는 운용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나 운용 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비교지수: KOSPI200 x 실제주식편입비율+ CD x (100- 실제주식편입비율)
(비교지수 수익률은 동부자산운용 홈페이지(www.dongbuam.co.kr)에서 확인가능)

2. 주요 투자전략

(1) 주식 운용전략

① 주식포트폴리오 구성

- KOSPI200지수 구성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종목 또는 당사 조사분석팀 추천 종목을 대상으로 유동성 및 변동성을 고려하여 종목(50~80개) 및 구성비 결정(펀드규모 및 시장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 주식포트폴리오의 평균수익률이 KOSPI200지수보다 낮아서 발생할 수 있는 운용수익률 하락을 관리
 - 1) 시가총액 순위가 높은 종목에 대해서 가중치 부여
 - 2) 당사 조사분석팀의 투자의견(Overweight/Neutral/Underweight)을 반영하여 가중치 부여
 - 3) 개별종목의 유동성(거래량/거래대금)에 따른 가중치 부여
 - 4) 주기적인 운용경과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실시

② 금융공학기법을 이용한 편입비 조정

- 주식편입비는 주식운용 개시시점의 지수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
- 주가하락시 편입비 확대, 상승시 편입비 축소하는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비중조절로 수익 추구
- 종목별로 민감도(델타)에 따라 편입비율 조정

③ 리스크관리

- 주식포트폴리오의 평균수익률과 KOSPI200지수 수익률과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수익률 차이가 3%p 초과할 경우 리스크 관리
 - 포트폴리오 구성종목에 대한 개별 분석
 - 분석결과에 따라 종목교체 / 비중축소 / 비중유지 등을 결정하여 실시
- 매월 조사분석팀의 투자의견을 반영하여 종목리스크 관리

(2) 장내파생상품 운용전략

- ① 운용기간 중 기준지수 대비 20%이상의 하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장내파생상품을 이용
- ② KOSPI200지수 선물 및 옵션포지션 조정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주식포트폴리오 보유로 인한 손실을 줄임
- ③ 기준지수 대비 40%이상 하락한 적이 없을 경우 손실 최소화 추구
 - 운용기간 중 기준지수 대비 40% 이상 하락한 적이 없으면 -20% ~ -40% 구간에 있을 경우 파생상품 투자부분에서 수익 추구
 - 델타헷징전략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선물 및 옵션포지션 조정
 - 기준지수 대비 40% 이상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파생상품 투자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펀드의 원금보존 추구 가능성 소멸

*** 이 투자신탁은 2008년 10월 23일 기준지수 대비 40%이상 하락한 적이 있어 원금보존추구 가능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시장하락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장내파생상품 운용전략은 추구하지 않을**

*** 기준지수 : 주식운용 개시시점의 KOSPI200지수**

(3) 만기시점 목표 수익구조 추구전략 개요



* 상기 그래프는 만기 목표수익구조를 추구하는 운용전략에 대한 개요를 예시한 것으로 ELF의 만기수익구조와는 다름

- * 상기 그래프는 히스토리컬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KOSPI200지수는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한 비교지수이며 상기 그래프에서 실선은 만기목표수익구조를, 점선은 만기목표수익률의 변동가능성을 예시한 것으로, 실제 수익률은 펀드내 주식포트폴리오와 KOSPI200간의 종목 및 구성비의 상이에 따른 변동성의 차이, 시장상황 및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운용기간 중 40% 이상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라도 과도한 매매비용 등이 발생할 때, 주식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KOSPI200지수 수익률에 비해 저조할 때, 현격한 시장변동성 축소로 매매기회가 부족할 때, 파생상품투자수익으로 주식포트폴리오 보유손실을 방어할 수 없을 때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 운용기간중 40% 이상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하락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장내파생상품 운용전략을 실행하지 않으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40%이상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보다 주식시장의 등락에 보다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 상기 예시 수익률은 만기시점의 목표수익률 이므로, 중도환매시의 실현 수익률은 예시 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4) 추가수익 추구 전략

- ① 투자대상
 - 지수선물, 주식옵션, ETF 등을 활용
- ② 운용전략
 - 고평가 자산 매도, 저평가 자산 매수 등 다양한 차익거래 활용
 - ETF와 KOSPI200지수선물/지수옵션 간 가격괴리를 이용한 차익거래
 - 컨버전/리버설 등 이용
 - 추가적인 수익을 위한 전략으로 기회발생시 적극적으로 활용

(5) 채권 및 유동성 운용전략

- ① 투자대상
 - 채권 : 국고채, 통안채, 우량 은행채
 - CP/CD : A2 이상의 CP, 우량은행 발행 CD
- ② 운용전략
 - 드레이션을 1년 미만으로 유지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 추구

* 투자전략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15페이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1. 투자전략’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주요 투자위험

(1)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의 위험

이 상품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합니다.

(2) 주식 투자에 따른 위험

주식투자에 따른 위험은 경제성장을 등 변동에 따른 시장위험과 개별기업의 수익성 등 변화에 따른 종목위험이 있습니다.

(3) 채권투자에 따른 위험

채권발행주체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원금과 이자 손실 위험, 또는 투자원금 및 이자 회수지연에 따른 기회비용발생 위험 등 채무불이행위험과 이자율변경에 따른 채권가격 변동위험 및 재투자위험이 있습니다.

(4)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계약 종료 시점이 있으므로, 투자 파생상품의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동 계약을 청산할 경우 차월률 등으로 변경해야 하며, 이 경우 추가적 비용 발생 및 차월률과 당월률과의 가격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파생상품 투자 손실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 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헛지전략과 자산배분전략을 구사함에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하게 움직일 경우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5) 만기수익구조 불일치 위험

만기시 목표수익구조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지만, 실제 운용상황에 따라 운용수익률은 목표수익률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고, 운용기간 중 기준지수 대비 40%이상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용기간 중 기준지수 대비 40%이상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라도 과도한 매매비용 등이 발생할 때, 주식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KOSPI200지수수익률에 비해 저조할 때, 현격한 시장변동성 축소로 매매기회가 부족할 때, 파생상품 투자수익으로 주식포트폴리오 보유손실을 방어할 수 없을 때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투자위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17페이지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중 '2. 투자위험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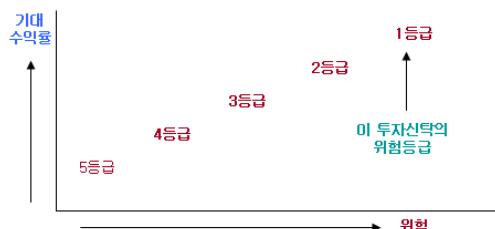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의 주요 운용자산은 주식이며, 주식포트폴리오의 비중 조정을 통해 만기 목표수익구조를 추구하는 투자신탁입니다. 따라서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위험과 만기 목표수익구조를 이해하고 일정구간에서의 제한된 수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중간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위험등급	동부자산운용의 운용중인 투자신탁상품(예시)
1등급	동부 델타-프리베주식혼합투자신탁 제1호
2등급	동부한사람채권혼합투자신탁 제1호
3등급	동부 델타Plus1단위채권혼합증권투자신탁
4등급	동부액티브뉴트럴파생상품투자신탁 제1호
5등급	NEW해오름신종MMF투자신탁 제3호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 분류



5.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에 발표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 총액"이라 한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 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개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운용회사(www.dongbuam.co.kr)·판매회사·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6. 운용전문인력

성명	소속부서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이경희	AI 운용본부	본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운용본부 본부장 - 서울대 대학원 수학과, CFA - 주식 및 파생상품운용(동부자산 6년) - 동원증권, (주)Fonet 연구개발실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AI 2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위 펀드를 대표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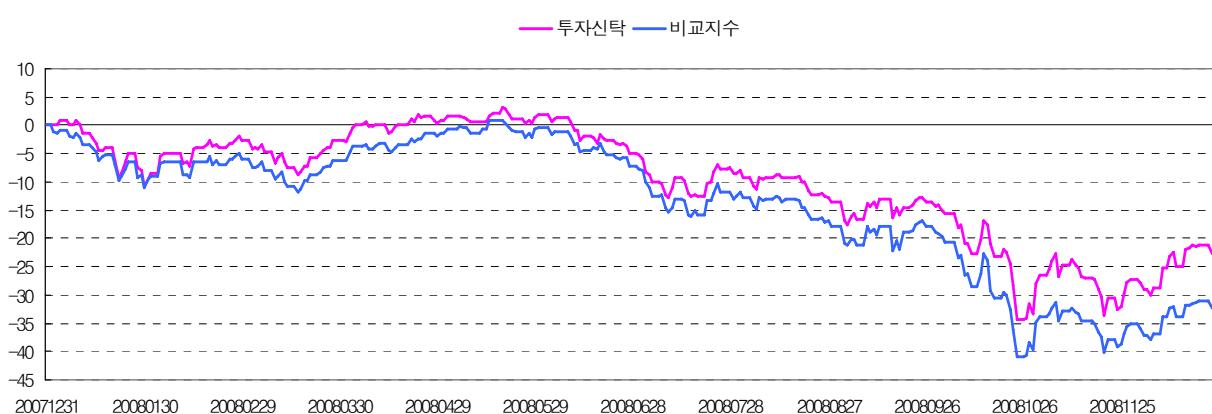
* 운용전문인력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24페이지 ‘제 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의 I. 자산운용회사 중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투자실적 : 아래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연도별 수익률 추이

기간	2007.12.31~2008.12.23
투자신탁	-22.77%
비교지수	-32.39%

비교지수: KOSPI200*실제주식편입비율 + CD*(100-실제주식편입비율)



III. 수수료 · 보수, 과세

1. 수익자가 직접 부담하는 수수료

구 분	지급비율(연간, %)	지급시기
선취 판매수수료	납입금액의 1.0%	매입시
후취 판매수수료	해당 사항 없음	
환매수수료(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180일 미만 이익금의 30%	

2. 투자신탁이 부담하는 보수 및 비용

구 분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비고(지급시기)
운용회사 보수	연 0.3625%	매 3개월 후금
판매회사 보수	연 0.7900%	
수탁회사 보수	연 0.0300%	
일반사무관리 보수	연 0.0175%	
기타 비용	연 0.7800%	
총 보수 · 비용 비율	총 연 1.98%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 · 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투자기간	1년 후	3년 후	5년 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 · 비용	283,389	715,853	1,192,645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 · 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취판매수수료 또는 보수 · 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 · 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 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서 납부한 이자 ·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다시 환급받게 되므로 투자신탁에서는 이자 ·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 · 평가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 상장주식 등의 매매 · 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15.4%(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최고 한도세율 25%)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IV. 수익증권의 매입 · 환매, 분배

1. 매입

(1)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을 하셔야 합니다.

(2) 매입 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1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표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나) 오후 15시 이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구분	1 영업일	2 영업일	3 영업일
15시(오후 3시) 이전에 납입시	자금납입일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15시(오후 3시) 경과후 납입시	자금납입일		수익증권 매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과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22페이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1. 매입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환매

(1)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환매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15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오후 15시 이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구분	1 영업일	2 영업일	3 영업일	4 영업일
15시(오후 3시) 이전에 환매신청시	환매 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5시(오후 3시) 경과 후 환매신청시	환매 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와 관련하여 상세한 설명은 22페이지 '제 2 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의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중 '2. 환매관련 유의사항'에 기재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환매수수료 :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를 차등부과하며, 부과된 수수료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편입됩니다.

구 분	지급비율(연평균가액의 %)	비고(지급시기)
환매수수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180일 미만 이익금의 30%	환매시 1회

(4)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및 환매청구일 당일 15시[오후 3시] 이전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매입청구 및 환매청구가 15시[오후 3시] 이후에 이루어졌을 경우 당일 종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매입 또는 환매의 취소(정정)가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에 판매회사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3. 이익 등의 분배 등

-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수익자와 판매회사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당해 수익증권을 매수합니다.
- (2) 또한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유가증권의 매각자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

I . 투자전략 및 투자위험 등

1. 투자전략

(1) 주식 운용전략

① 주식포트폴리오 구성

- KOSPI200지수 구성종목 중 시가총액 상위종목 또는 당사 조사분석팀 추천 종목을 대상으로 유동성 및 변동성을 고려하여 종목(50~80개) 및 구성비 결정(펀드규모 및 시장여건에 따라 변동가능)
- 주식포트폴리오의 평균수익률이 KOSPI200지수보다 낮아서 발생할 수 있는 운용수익률 하락을 관리
 - 1) 시가총액 순위가 높은 종목에 대해서 가중치 부여
 - 2) 당사 조사분석팀의 투자의견(Overweight/Neutral/Underweight)을 반영하여 가중치 부여
 - 3) 개별종목의 유동성(거래량/거래대금)에 따른 가중치 부여
 - 4) 주기적인 운용경과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실시

② 금융공학기법을 이용한 편입비 조정

- 주식편입비는 주식운용 개시 시점의 지수수준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
- 주가하락시 편입비 확대, 상승시 편입비 축소하는 전략을 통해 지속적인 비중조절로 수익 추구
- 종목별로 민감도(델타)에 따라 편입비율 조정

③ 리스크관리

- 주식포트폴리오의 평균수익률과 KOSPI200지수 수익률과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수익률 차이가 3%P 초과할 경우 리스크 관리
 - 포트폴리오 구성종목에 대한 개별 분석
 - 분석결과에 따라 종목교체 / 비중축소 / 비중유지 등을 결정하여 실시
- 매월 조사분석팀의 투자의견을 반영하여 종목리스크 관리

(2) 장내파생상품 운용전략

- ① 운용기간 중 기준지수 대비 20%이상의 하락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장내파생상품을 이용
- ② KOSPI200지수 선물 및 옵션포지션 조정을 통해 얻은 수익으로 주식포트폴리오 보유로 인한 손실을 줄임
- ③ 기준지수 대비 40%이상 하락한 적이 없을 경우 손실 최소화 추구
 - 운용기간 중 기준지수 대비 40% 이상 하락한 적이 없으면 -20% ~ -40% 구간에 있을 경우 파생상품 투자부분에서 수익 추구
 - 델타헷징전략을 사용하여 지속적으로 선물 및 옵션포지션 조정
 - 기준지수 대비 40% 이상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 파생상품 투자부분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펀드의 원금보존 추구 가능성 소멸

※ 이 투자신탁은 2008년 10월 23일 기준지수 대비 40%이상 하락한 적이 있어 원금보존추구 가능성이 소멸되었으므로 시장하락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장내파생상품 운용전략은 추구하지 않음

※ 기준지수 : 주식운용 개시시점의 KOSPI200지수

(3) 만기시점 목표 수익구조 추구전략 개요



- * 상기 그래프는 만기 목표수익구조를 추구하는 운용전략에 대한 개요를 예시한 것으로 ELF의 만기수익구조와는 다름
- * 상기 그래프는 하스토리컬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제시한 것으로서, KOSPI200지수는 고객의 이해를 돋기 위한 비교지수이며 상기 그래프에서 실선은 만기목표수익구조를, 점선은 만기목표수익률의 변동가능성을 예시한 것으로, 실제 수익률은 펀드내 주식포트폴리오와 KOSPI200간의 종목 및 구성비의 상이에 따른 변동성의 차이, 시장상황 및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 운용기간 중 40% 이상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라도 과도한 매매비용 등이 발생할 때, 주식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KOSPI200지수 수익률에 비해 저조할 때, 현격한 시장변동성 축소로 매매기회가 부족할 때, 파생상품투자수익으로 주식포트폴리오 보유손실을 방어할 수 없을 때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 운용기간중 40% 이상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하락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장내파생상품 운용전략을 실행하지 않으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40%이상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보다 주식시장의 등락에 보다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 상기 예시 수익률은 만기시점의 목표수익률 이므로, 종도환매시의 실현 수익률은 예시 수익률보다 낮을 수 있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음.

(4) 추가수익 추구 전략

- ① 투자대상
 - 지수선물, 주식옵션, ETF 등을 활용
- ② 운용전략
 - 고평가 자산 매도, 저평가 자산 매수 등 다양한 차익거래 활용
 - ETF와 KOSPI200지수선물/지수옵션 간 가격괴리를 이용한 차익거래
 - 컨버전/리버설 등 이용
 - 추가적인 수익을 위한 전략으로 기회발생시 적극적으로 활용

(5) 채권 및 유동성 운용전략

- ① 투자대상
 - 채권 : 국고채, 통안채, 우량 은행채
 - CP/CD : A2 이상의 CP, 우량은행 발행 CD
- ② 운용전략
 - 드레이션을 1년 미만으로 유지하여 안정적인 이자수익 확보 추구

2.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자산운용회사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보호공사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표는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을 중요도 순으로 나열한 것입니다.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주식 등 가격변동위험	주식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동 주식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투자신탁 자산의 가치는 국내 및 국제 정치·경제적 상황의 변화, 정부 정책의 변화, 과세제도의 변경 등 기타 관련법의 변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채권 등 가격 변동위험	신탁재산의 일부가 채권 및 유동성자산에 투자되는데, 금리변동에 따라 동자산의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위험에 노출됩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을 발행한 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그 유가증권, 단기금융상품 등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거래량이 적은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유가증권의 유동성 부족, 특히 해외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유동성 부족으로 신탁재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유동성 부족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투자 위험	파생상품에의 투자는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은 계약 종료 시점이 있으므로, 투자 파생상품의 계약기간 종료로 인해 동 계약을 청산할 경우 차월물 등으로 변경해야 하나, 이 경우 추가적 비용 발생 및 차월물과 당월물과의 가격차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파생상품 투자 손실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초 자산의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헛지전략과 자산배분전략을 구사항에 불구하고, 파생상품은 시장 내의 수급과 시장 외부변수에 따라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상이하게 움직일 경우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투자자산 가치의 변화를 초래 할 수 있습니다.
조기 환매 위험	수익자가 환매요청시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동 환매수수료는 신탁재산으로 귀속됩니다.
기타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기시 목표수익구조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용하지만, 실제 운용상황에 따라 운용수익률은 목표수익률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 본 상품의 대부분은 주식 및 주식관련 장내파생상품 등에 투자되므로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경우 목표수익률보다 저조한 수익률을 보이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운용기간 중 40% 이상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라도 과도한 매매비용 등이 발생할 때, 주식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 KOSPI200지수수익률에 비해 저조할 때, 현격한 시장변동성 축소로 매매기회가 부족할 때, 파생상품투자수익으로 주식포트폴리오 보유손실을 방어할 수 없을 때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운용기간중 40% 이상 하락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하락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장내파생상품 운용전략을 실행하지 않으므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40%이상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보다 주식시장의 등락에 보다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동성, 변동성, 시가총액 등을 감안하여 주식포트폴리오를 구성하므로 구성된 종목에 따라 운용수익률이 목표수익률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성된 종목이 KOSPI200지수수익률을 하회하는 경우 운용수익률이 목표수익률보다 저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된 종목의 합병 및 증자 등이 운용수익률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운용 개시 초기 또는 만기 시점의 주가 급락, 운용기간 중 변동성의 지속적인 하락 등으로 운용수익률이 저조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 지속적인 중도 환매가 발생하여 설정금액이 일정규모 이하로 감소하면 주식포트폴리오 구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경우 주식포트폴리오 대신 선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설정금액이 주가지수선물을 이용하기에도 적은 규모 이하로 감소할 경우 유동성자산만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위의 두 경우 모두 펀드 운용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p> <p>- 만기상환이나 중도환매시 실제 운용기준으로 공시되는 기준가로는 원금수준(기준가 1,000원)이지만 과표기준가는 1,000원 이상일 수 있으며, 이때 고객이 실제 수령하는 세후 금액은 원금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p>
환매연기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해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투자신탁의 상세정보’에 ‘IV 매입·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의 ‘2.환매관련 유의사항/(3)수익증권의 환매연기사유’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3. 투자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내역
①	주식	95% 이하	증권거래법 제2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 및 주권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②	채권 및 어음	95% 이하	채권 : 증권거래법 제2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계획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어음 : 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 발행 · 매출 또는 중개한 어음 · 채무증서 또는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3+ 이상인 것
③	수익증권	5%이하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에 의하여 자산운용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④	상장지수 간접투자 기구	30%이하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 간접투자증권
⑤	주식 및 채권관련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	위탁증거금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5%이하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
⑤ 기타		<p>법시행령 제108조 규정에 의한 자산보관회사 고유재산과의거래 가능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의 활용을 위해 단기대출, 금융기관 예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p>	
<p>* 주식, 채권, 어음의 경우 다음 각호의 1 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다음 제 4 호 및 제 5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 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등의 가격변동으로 약관 제3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4. 투자 제한

자산운용회사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자산운용회사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파생상품 투자	동일회사가 발행한 투자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 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을 포함한 투자신탁재산 총위험 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투자증권(동일회사가 발행 한 주식을 제외한 투자증권은 동일종목으로 간주)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투자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총액의 100%까지: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지방채증권, 정부투자기관이 발행한 채권 및 어음, 상장지수간접투자기구(ETF)의간접투자증권 등 - 동일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비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등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 자세한 투자제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 자산의 평가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을 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산의 종류별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합니다.

대상자산	내용
상장주식	평가기준일에 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 회계법인·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거래소가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단, ELW의 경우 발행회사에서 제공하는 가격으로 평가
상장 · 비상장채권	2개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 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으로 평가
간접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간접투자증권은 거래소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로 평가

<자산평가의 예외>

- 가. 상기에서 규정된 방법에도 불구하고 출자전환주식 등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 등은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 자산운용회사가 외화로 표시된 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외화를 원화로 환산하는 환율은 평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국환증개회사에서 고시하는 최근 거래일의 매매기준을 또는 최종시가로 합니다. 이 경우 외국환증개회사가 매매기준을 또는 최종시가를 고시하기 전에 전자매체 등을 이용하여 미리 고시한 환율이 있는 경우에는 그 환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II. 투자증권, 장내파생상품 거래시 증개회사의 선정기준

구분	증개회사의 선정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의 거래	<p>① 회사는 증개회사를 선정함에 있어 고객에 최대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1. 펀드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증개수수료)이나 수익(Value of Research)이 주어진 여건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2. 거래 유형(예: 상장주식 블록매매, 장외주식매매, 파생거래, 채권매매 등)에 따라 가장 효율적으로 매매를 체결시키는 회사3. 증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가 과다하지 않은 회사 <p>② 증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는 제공 받는 서비스의 질과 양, 다른 증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들과 비교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높아서는 아니 된다.</p>

IV. 매입 · 환매 및 분배관련 유의사항

1. 매입관련 유의사항

- (1) "영업일" 이라 함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 (2)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매수한 때에 이 신탁약관이 정한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2. 환매관련 유의사항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직접 환매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수탁회사에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1)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의 경우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의 일정한 날의 전전일(15시(오후 3시)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 포함)과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2)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자체없이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 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의 이익 또는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①또는②에 준하는 사유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구체적인 사유는 약관 제 26 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3)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일부에 대하여는 환매를 연기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간접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간접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3. 이익, 분배 등 관련 유의사항

특이사항 없음

제3부 자산운용회사 및 투자신탁의 관계인에 관한 사항

I. 자산운용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동부자산운용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5 (787-3700)	www.dongbuam.co.kr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의 설정 · 해지/투자신탁의 운용 · 운용지시/투자회사 재산의 운용

(2) 자산운용회사의 의무와 책임

-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간접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최근 2사업연도의 요약재무내용

(1) 대차대조표

과 목	(단위 : 백만원)	
	제 12 기 (08.3.31)	제 11 기 (07.3.31)
자 산 총 계	32,011	26,423
I. 현금및예치금	22,885	21,279
II. 유가증권	998	989
III. 대출채권	224	109
IV. 유형자산	357	382
V. 기타자산	7,547	3,664
부채 총계	1,498	258
I. 예수부채	57	37
II. 기타부채	1,441	221
자 본 총 계	30,513	26,165
I. 자본금	30,000	30,000
II. 이익잉여금	507	-3,862
III.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	27
부채와자본총계	32,011	26,4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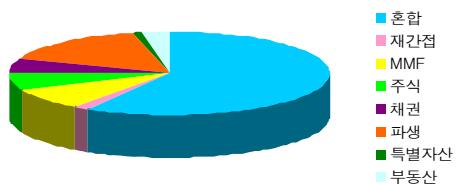
(2) 손익계산서

과 목	(단위 : 백만원)	
	제 12 기 (08.3.31)	제 11 기 (07.3.31)
I. 영업 수익	11,520	4,591
II. 영업비용	8,358	4,533
III. 영업이익	3,162	58
IV. 영업외수익	1,215	998
V. 영업외 비용	9	2,946
VI. 법인세차감전순이익	4,368	-1,890
VII. 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	-	0
VIII. 당기순이익	4,368	-1,890

4. 운용자산규모(2008.11.30기준)

(단위 : 억)

구분	주식	혼합	채권	MMF	파생	재간접	특별자산	부동산	합계
수탁고	3,319	29,766	2,858	4,402	7,826	671	464	1,385	50,691



5. 운용전문인력(펀드매니저)에 관한 사항

(단위 : 억원, 개)

성 명	나이	직위	운용현황		주요운용경력 및 이력	비고
			운용종인 다른 간접투자기구수	다른 운용 자산규모		
이경희	1968년	본부장	132	14,521	- AI 운용본부 본부장 - 서울대 대학원 수학과CFA - 주식 및 파생상품운용(동부자산 6년) - 동원증권, (주)Fonet 연구개발실	팀운용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AI 2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을 총괄하는 책임펀드매니저입니다. 아울러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을 교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판매회사의 영업점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I. 판매회사

1. 회사의 개요

판매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1588-1111)	www.hanabank.com

2.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수익증권 판매업무(수익증권의 모집 및 매출업무) · 환매업무
- 수익증권 교부업무 / 이익분배금 및 상환금 지급업무와 원천징수 업무
- 각종 장부 · 서류등의 비치, 수익자 앞 제공 및 공고 업무 등 기타 법령 및 신탁약관에서 규정한 사항

(2) 판매회사의 의무와 책임

▪ 의무

- ① 판매회사는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의 취득을 권유함에 있어 동 투자설명서를 제공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② 판매회사의 임직원 및 취득권유인은 법 제 57 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판매행위준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책임

판매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판매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II. 수탁회사

1. 회사의 개요

수탁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회사연혁 등(홈페이지 참조)
하나은행	서울시 중구 을지로 1가 101-1(3788-5128)	www.hanabank.com

2. 주요 업무

(1) 주요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자산운용회사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간접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 배당 · 수익금 · 임대료 등의 수령 등

(2) 수탁회사의 의무와 책임

▪ 의무

- ① 수탁회사 간접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신탁약관, 투자설명서, 신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② 수탁회사는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지시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자산운용회사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 · 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③ 수탁회사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 · 신탁약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간접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출이 적정한지의 여부 / 운용지시 시정요구 등에 대한 자산운용회사의 이행내역 / 투자신탁재산별 자산배분내역 및 배분결과

- 책임

수탁회사가 법령,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수탁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산운용회사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연대책임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하여 간접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IV. 일반사무관리회사

1. 회사의 개요

사무관리회사명	주소 및 연락처
HSBC펀드서비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6-4(02-3771-9834)

2.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자산운용회사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V. 채권평가회사

1. 회사의 개요

회사명	한국채권평가	KIS채권평가	나이스채권평가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11번지 광화문빌딩 9층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 유화증권빌딩 9층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5층

2. 주요 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간접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자산운용회사 및 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4부 수익자의 권리 및 공시에 관한 사항

I . 수익자의 권리

1. 수익자총회 및 의결권

(1) 수익자총회의 구성 및 권한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이때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 수익자총회는 수탁회사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의 요청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며 자산운용회사의 본점소재지 또는 이에 인접한 지역에 소집합니다.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의 회의일 전일까지 자산운용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수익자총회 의결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자산운용회사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증권예탁결제원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수탁회사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자산운용회사의 영업양도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2. 잔여재산분배

- 자산운용회사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되거나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수탁회사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수익자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 하지 못합니다.
-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간접투자재산명세서 / 간접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자산매매거래내역서

4. 손해배상책임

- 자산운용회사가 법령,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5. 재판관할

-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6. 기타 수익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의 신탁약관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자산운용회사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자산운용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자산운용협회 인터넷(www.am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공시

1. 정기공시 및 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 영업연도의 결산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 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건전성 · 수익성 및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산운용회사의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1) 영업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0일까지 이를 금융감독위원회 및 자산운용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회사의 자본변동상황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현황과 수익증권의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여부 및 그 내용(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2) 자산운용보고서

자산운용회사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탁회사의 확인을 받아 3월에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를 통하여 우송하여야 하나, 간접 투자자가 전자우편을 통하여 자산 운용보고서를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에 의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수탁회사보고서

수탁회사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법에서 규정한 수탁회사보고서를 수익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4) 약관변경

자산운용회사는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증권예탁결제원을 통한 모든 수익자에의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약관을 변경한 경우 : 신탁약관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간신문 및 컴퓨터통신을 통한 1회 이상 공고
신탁약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탁약관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회사의 영업점포내에 1월 이상 게시하여야 합니다.

(5) 기타 장부 · 서류

자산운용회사 · 수탁회사 · 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1) 수시공시 등

자산운용회사, 수탁회사 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 때에는 매일경제신문에 공고하되,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때에는 한국경제신문에도 공고합니다. 자산운용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자체없이 자산운용회사(www.dongbuam.co.kr), 판매회사 및 자산운용협회(www.amak.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자산운용회사,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변경 /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 법령이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 수익자총회의 의결내용 / 신탁약관 또는 투자설명서의 변경. (단,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약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자산운용회사의 합병, 분할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 그 내용 등의 법령이 정하는 사항

(2) 의결권 행사

자산운용회사는 간접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5일전까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내용을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참고 : 펀드 용어 정리

용어	내용
델타	옵션의 민감도 중 하나로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대한 옵션가격의 변동을 나타내며 옵션의 민감도 중 델타는 가장 중요한 값으로 기초자산을 이용하여 옵션을 헤징할 때 헤징비율로 이용됩니다. 델타는 0~1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기초자산의 움직임과 거의 같은 가격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개방형(간접투자기구)	투자자가 원할 시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펀드입니다.
금리스왑	리스왑은 금리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금융 기관끼리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를 일정기간동안 상호교환하기로 약정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이때 원금은 바꾸지 않고 서로 이자지급의무만을 바꾸며, 금리스왑은 보통 금리상승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해 주로 활용됩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매입·환매 및 분배시 적용되는 가격으로, 기준가격의 산정은 전일의 펀드 순자산총액을 전일의 펀드 잔존 수익증권 수량으로 나누어 1,000을 곱한 가격으로 표시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레버리지효과	파생상품을 이용한 고위험의 투자방법으로 적은 투자금액으로 큰 수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주가가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면 큰 손실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보수	투자신탁의 운용 및 관리와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시 말해 재산을 운용 및 관리해준 대가로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이는 통상 연율로 표시되며, 신탁보수에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이 있습니다. 보수율은 상품마다 다르게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선물환거래	장래의 일정기일 또는 일정기간 내에 일정액의 외국통화를 일정한 환율로 매매할 것을 미리 약속하는 거래로 환헤지의 수단으로 자주 이용됩니다.
설정	신탁약관에 의거, 수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단위의 신탁금을 수탁회사에 납입하는 것을 설정이라고 하며, 신규설정과 추가설정이 있습니다.
성과보수	현행 법은 불특정다수의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펀드(공모펀드)의 경우 자산운용회사가 펀드의 성과에 따라 추가적 보수(성과보수)를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 혹은 투자일임계약의 경우 약관(계약)에 따라 성과보수의 수취가 가능합니다.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사모펀드. 투자일임계약과 성과보수가 없는 공모펀드를 함께 운용함에 따라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 등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투자노력을 기울이는 등 이해상충발생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성이 있습니다.
수익자총회	펀드의 수익자 회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2003년 10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제정되면서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개념입니다. 수익증권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자산운용회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총 수익증권 수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수익자의 출석으로 열리는데, 상정된 안건은 출석한 수익자 <u>의결권</u> 의 3분의 2 이상과 수익증권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만약 이 의결에 반대하는 수익자는 총회가 개최되기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증권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의 일종으로 자산운용회사가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만들 때 이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권리증서를 말합니다. 투자신탁에 가입(매입)한다는 것은 이 수익증권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수탁고	펀드에 유치된 자금의 양, 즉 자산운용회사가 고객들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규모를 지칭합니다.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에게 사채 발행 이후에 기채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징급할 때, 그 지급자가 그 지급받는 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을 받을 때 월급(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국가를 대신해서 미리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 납입일(통상 매달 10일)에 일괄적으로 국가에 납부하기 때문입니다
자산운용협회 펀드코드	상장주식의 경우 회사명 또는 코드번호 6자리를 활용하여 수익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펀드 또한 자산운용협회가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가 존재하며, 펀드명 뿐만 아니라 이러한 코드를 이용하여 펀드의 각종 정보에 대한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기업의 부동산을 비롯한 여러가지 형태의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하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실채권이나 직접 매각하기 어려운 부동산 등 담보로 맡기고 ABS를 발행해 쪼개서 판매함으로써, 자금 조달의 용이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특수사채의 일종으로,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종류형(간접투자기구)	통상 멀티클래스펀드로 불리웁니다. 멀티클래스 펀드란 하나의 펀드 안에서 투자자 그룹(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판매보수와 수수료 체계를 적용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수와 수수료의 차이로 클래스별 기준가격은 다르게 산출되지만 각 클래스는 하나의 펀드로 간주돼 통합 운용되므로 자산운용 및 평가 방법은 동일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증서로, 만기에 특정종목의 주가나 주가지수를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상품으로 옵션과 유사합니다. 살 수 있는 상품은 '콜워런트', 팔 수 있는 상품은 '풋워런트'입니다.
주식형(간접투자기구)	약관(정관)상 주식에 간접투자재산의 60%이상을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증권투자신탁	접투자재산의 40% 이상을 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추가형(간접투자기구)	기 설정된 펀드에 추가 설정이 가능한 펀드입니다.
판매수수료	투자자가 펀드 매입 시, 판매회사에 일회적으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상품에 대한 취득 권리 및 설명, 투자설명서 제공 등에 수반되는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수료 지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합니다.
해지	투자신탁(펀드)의 신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스팟펀드처럼 약속한 수익률에 도달할 경우 펀드의 자산을 모두 처분,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나눠주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환매	만기가 되기 전에 맡긴 돈을 되찾아 가는 것을 환매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투신제도상 고객이 중도인출을 요구할 경우 투신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단위형(폐쇄형) 상품의 경우 일정기한까지 중도해약을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계약 기간 이전 중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벌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되게 됩니다.
환매조건부채권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환해지	해외펀드는 대부분 달러로 주식을 사들이기 때문에 도중에 환율이 떨어지면 환차손(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투자하는 펀드들은 선물환 계약(미리 정해놓은 환율을 만기 때 적용하는 것) 등을 이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환해지 전략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투자설명서 교부 및 주요내용 설명 확인서

투자선택 명칭 : _____

판매일 : _____

투자자 확인 사항

○ 투자자께서는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후 아래의 내용을
밑줄친 곳에 똑같이 자필로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시기 바랍니다.

○ 투자설명서를 제공받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 들었음.

(투자설명서를) _____ (그 주요내용을) _____ .

년 월 일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